

## 개교83주년 민족사학의 거목으로 우뚝

### 8월 장기근속표창·동국발전후원회 구성 기념식 50억규모 「동국컨벤션센터」건립 추진해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진리를 구명 전수하고자 구한말 명진학교로 출발하여 민족사학의 거목으로 성장한 본교의 「개교 83주년 기념식」이 오는 8월 오전 11시李智冠총장, 黃彰經이사장, 鄭在哲총장회장을 비롯한 학생,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강당에서 거행된다.

이날 행사는 삼귀의례로 시작, 李泰敬(선학) 정각원장의 발원문 봉독, 金榮成(형정학) 기획조정실장의 학교연혁보고, 장기근속자 공포패 및 기념품 수여, 총장 기념사, 이사장 고사 및 동창회장 축사등으로 진행되며 식후에는 본관(2층교수세미나실)에서 자축연을 갖기도 한다.

한편 장기근속자는 다음과 같다.

▷30년 근속자 ▲李載昌(불교학) ▲金榮成(통리학) ▲金道泰(화학공학) ▲張漢基(연극영화학) <이상 4명>

▷20년 근속자 ▲金煥泰(불교학) ▲陸植培(통리학) ▲李瑞雨(경찰행정학) ▲趙昌華(회계학) ▲南宣祐(토목공학) ▲吉正天(건축공학)

▷10년 근속자 ▲沈載亨(화학공학) ▲辛孝善(식품공학) ▲辛孝善(식품공학) 교수의 직인 6명. 「동국발전의 밤」개최 한편 「동국발전의 밤」(개교 83주년기념 단판)이 오는 6월 오후 6시 힐튼호텔(1층 컨벤션센터)에서 교직원, 동문, 학생대표, 불교계인사등 발원문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동국컨벤션센터(가칭)」 건립계획 발표와 「개교 90주년을 향한 동국발전추진사업회」 및 「동국발전후원회」 구성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1인당 5만원이다.

「동국컨벤션센터(가칭)」는 불교종립학교와 민족사학의 전통에 따라 한국근대교육사의 한 페이지를 밝히려는 본교의 빛나는 업적을 기념하고, 동서양의 학술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국제적인 대화와 문화의 광장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 건물의 규모는 연건평 5천평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동국발전(구재향군인회관) 및 해학문일대에 건립하게 되는데 착공은 오는 9월 10일에 하게되며 공사비는 총 50여억원이 소요된다.



▷지난 1일 국제노동절을 기념해 정, 입학과 등 전5개학과중 42개학과가 동맹휴업을 단행했다. <왼편기사7면>

## 정기 학생총회 오늘(3일) 열려 27일서 연기...상반기 사업계획보고 등

89학년도 1학기 「학생총회」가 지난달 27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날씨와 총회준비부 준비부족으로 연기돼 오늘(3일) 오후 1시 도서관에서 열리게 됐다.

상반기 사업계획보고, 학자부의 이후 전망등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오는 17일에서 19일까지의 광주항정계승무정주간에 따른 제2차 동맹휴업업제안이 있다.

한편 총회의 「학생총회」를 알리는 공지가 총회 4일전까지 붙지 않은 점과 준비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이 있었고, 학생회측의 애매모호한 규정(정기학생총회와 비상학생총회의 분리규정 미비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점)은 보완이 취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부처님 오신뜻 밝히다” 불교도 주간 및 기념행사 다채

佛紀 2천 5백33주년을 맞아 「불교도주간」 행사도 불탄기념행사가 교내외 일원에서 활발히 열리고 있다.

「해방의 불길로 타올라라」란 주제 아래 불교 불교도 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불교도 주간행사는 지난 2일 오후 2시 중앙강당에서 법성스님 강연회를 갖고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창작극 「부처와 열반」을 학생회관 4층 소극장에서 공연했고 지선스님(통불학의장)의 제사와 토건스님(석림회총무)의 사의로 수계대법회를 지난 28일 오후 5시 불상앞에서 가졌다.

한편 수계대법회가 끝난후 불교 교정에 있는 연등에 점등식을 갖기도 했다.

오는 10일 오후 3시에는 「제3회 도을 김용옥선생 학술강연회」가 「기월화과 불교유식」이란 내용으로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회는 제1회 「나와 불교를 어떻게 본다」의 강연내용을 유식적으로 심화시키면서 도을 특유의 기철학적 세계관 접합의 모색을 시도한다.

한편 제2회 강연은 「한국과 일본의 사상을 논한다」란 제목으로 작년 11월에 열린바 있다.

「제1회 전국 참불가 합창경연대회」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주최로 지난 30일 오전10시 중앙강당에서 열렸다. 1부에서는 개회사, 삼귀의례, 반야심경, 서의현총무원장 축사가 있었고, 2부에서는 합창경연대회가, 3부에서는 시상식과 사문선생등으로 각각 진행되었다.

또한 오는 7일 오후 7시 여의도광장에서 있을 조국일념요식에 참가한 후 조계사까지 연등행렬을 한다.

한편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오는 12일 오전 9시정각원에서 거행된다.

## 인상액 개인별 환불

서울캠퍼스 89학년도 1학기 신입생 입학금 및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환불협상이 지난 28일 오후 3시 1학년 자치협의회와 학교당국의 3차 협상결과 타결됐다.

이에 따라 1학년 학생들은 각 가정에서 우송된 소정양식의 환불신청서를 내일(4일)까지 해당대학 교과과로 제출해야되며, 환불방법은 은행 계좌입금(조흥은행, 국민은행)으로 하며, 시기는 신청서 마감 직후부터이다.

1학년 학생들과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3학년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환불도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아직 환불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편, 지난 3월 9일 89학년도 제1학기 전면동원시 학교당국과 학생대표가 등록금 및 입학금 인상분을 환불받아 동국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1학년 개인에게 각각 환불하게 된 것은 1학년자치협의 결과 이번엔 환불받는 금액에 신입생들에게 강제징수한 것이라 결정, 발전기금으로 내놓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 수습기자 추가모집

大學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있는 본사에서 어둡고 혼란의 時代를 예리한 필명으로 파헤쳐 나갈 意識있는 男女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 서울·경주캠퍼스 8명  
②출시지역: 1학년 男女 學生  
③모집분야: 일반 및 사기기자  
④제출서류: 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 (지침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

⑤원서접수: 서울·경주 5월18일 오후 4시까지  
⑥시험일자: 서울·경주 5월18일 오후 5시  
⑦시험과목: 1차 필기(국어·상식·작문)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 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 학림관 J201 (서울캠퍼스)  
※합격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989년 5월 31일  
東大新聞社

### 보리수

제작된 겨울 자유중국어 공부본원 열려나와 마침 중국의 전통불상을 특별전시하고 있었다.

문의한이지만 이 불상특별전을 보고 한가지 느낀점이 있다. 역시 불상은 한국의 것이 으뜸이란 감상이 그것이다.

우리는 부처님하면 의례 자비로움을 연상한다. 소재가 돌이 되었던 쇠가 되었던 한국의 불상들은 하나같이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자비로운 빛을 은은히 발한다. 그래서 무한한 생명력이 있다.

그런데 중국의 불상들에선 이와같은 미소나 자비의 빛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회화적인 포대화상의 상이 중국인의 낙천적 기질을 나타내는 것같이 인상을 짓고있지만, 칼을 든 관음상을 보고는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다른 불상들

에선 미소가 보이지 않았다. 석굴암 대불을 연상하면서 역시 옛 우리조상들의 마음씨가 한없이 따사로우셨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12일은 사월 초파일, 부처님이 오신날이다. 2천6백13번째로 맞는 이번 초파일에 불교계에서는 중흥의 비종교적이건 형식적인 내용중심에서 벗어나 불교 전통의식을 오늘에 되살리는 불교행사를 마련,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와 중생을 위해 열어보인 가르침을 참이 중국인의 낙천적 기질을 담겨 되새긴다고 한다.

7일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50만불자가 모여 불교대법회를 갖고, 초파일인 12일에는 조계사를 비롯한 전

국 각사원에서 법회를 갖는다. 그런데 이번 행사중에서 가장의미가 깊은 것은 관불식(灌佛式)이 될 것이다 한다.

관불식(灌佛式)이란 머리와 어깨를 물에 씻어내는 관불은 청, 황, 적, 백, 흑의 오색향수로 행해지는 것이 전통의식이나, 이 향수를 우리는 김상수(吉祥水)라 했다.

부처님의 몸을 씻는다는 것은 곧 자기의 온갖 번뇌와 죄업을 씻는 것으로 생각되어 정복(淨福)과 불교를 누릴수 있는 상서로운이 있다는 뜻에서다.

이번 초파일엔 교정을 수놓은 오색향수가 세상의 무명을 밝히고 관불을 통해서는 마음의 때를 씻어, 우리를 옛흔의 따사롭고 자비로움을 되살리는 길이 다시 열렸으면 한다.

宋在雲

## 5월대동제 준비작업 활발

제13차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 의의를 주제로 하는 「5월대동제」가 오는 23일 학자부선교회를 시작으로 26일까지 나흘간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공공체육의 추렴」 「통일된 진행」 「대중성」 「재생산」의 원칙하에 열리는 이번 대동제는 과거의 목적성강조로 인한 경직성을 극복, 평양축전참가부정을 통한 국제문화의 완수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축제일정은 다음과 같다.

▷22일(전야제) ▲평양축전관련 강연회 및 심포지엄(1시, 중앙강) ▲홍원대제전(5시, 수영장) ▷23일(화자부의 날)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심포지엄(오전11시, 교수세미나실) ▲국(12시, 불상앞) ▲개막(2시, 관해광장) -길놀이, 투쟁 5중경기, 개막식, 모의총장선거, 대동출놀이, 탈·동국문화회 합동공연 ▷24일(평양축전의 날) ▲반민투쟁법에 관한 심포지엄(12시, 소극장) ▲반송제(2시, 중앙강) ▲민중가요 한마당(6시, 관해광장) ▲예술인의 밤(7시, 체육관) ▷25일(노동자·학생 연대의 날) ▲한국청년대회(1시, 중앙강) ▲도시빈민 초청강연회(12시, 학생회관) ▲입원강연회(3시, 해학관로비) ▲MRA공연(3시, 반송제) ▲마침내 가리리 노래극(4시, 불상앞) ▲노·학 한마당(6시, 관해광장) ▷26일(민중대단결의 날) ▲노·학 한마당(12시, 불상앞) ▲남사당공연(12시, 불상앞) ▲초청강연회(2시, 도서관)

## 사원모집

젊은人材의 창의와 진취적인 기상을 소중히 여기는 곳—  
三養의 터전에서 21세기를 향해 雄飛하십시오

1. 募集部門 및 應試資格	
事務職 및 營業職	經營學, 貿易學, 法學, 新放學
技術職	化學, 化工學, 機械工學, 電氣工學, 電子工學, 纖維工學, 食品工學, 環境工學, 高分子工學, 計測制御工學
研究職	纖維工學, 化學, 高分子工學

※各部門 다같이 兵役義務 畢 또는 免除者

2. 登衡方法	
가. 1차: 書類審査	
나. 2차: 面接 및 人性検査(書類合格者에 限하여 個別通知)	
다. 3차: 身體検査	

3. 提出書類	
가. 人誌願書 및 自己紹介書(當社 所定樣式, 但 陸軍은 陸軍樣式 可能).....	各 1부
나. 最終學校 全學年 成績證明書(研究職은 大學成績 包含).....	各 1부
다. 學位, 資格證 寫本(研究職에 限함).....	各 1부

4. 願書交付 및 接受	
가. 交付 및 接受期間: '89.4.16(일)~5.20(토)	
나. 交付 및 接受處: 陸軍·海軍·空軍 職業輔導處 또는 當社 總務部 人事課	
※郵便接受 可能: 郵便接受은 5月20日 13:00까지 到着分에 限함.	
(郵便番號: 110-470 서울特別市 鍾路區 蓮池洞 263 株式會社 三養社 總務部 人事課)	

5. 其他	
가. 國家 報勳對象者는 關係法에 依據 優待함.	
나. 配置會社: (株)三養社, 鮮一豆糖(株), 三南石油化學(株), 三養化成(株)	
다. 其他 詳細한 事項은 當社 總務部 人事課로 問議바람.	
(電話 743-7711, 744-7711 交換 307, 308, 309,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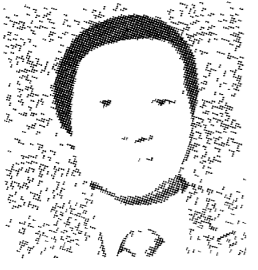
三養社

●總務部門: 福利, 福利, 福利, 福利, 福利  
●食品部門: 麵粉, 麵粉, 麵粉, 麵粉, 麵粉  
●化學部門: 化學, 化學, 化學, 化學, 化學  
●機械部門: 機械, 機械, 機械, 機械, 機械



# 비민주적 악법의 질곡 깨고 노동의 새날을

##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과 노동운동 과제



연기영 <법과대교수·노동법>

### I. 악법조차 지키지 않는 노정권

위헌·불법적인 공안법률수사본부에 의해 노동단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단체간부들을 연행·구속하는 탄압이 가중되고 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합수부의 위헌·불법성은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여러차례 밝혀 왔다. 자주화·민주화를 갈망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차경급진본순제」 운동으로 그 실체를 왜곡·조작하여 불법적인 탄압에 의해 탄압하는 처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현정권이 이렇게 강압적·불법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부정이며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낙인 찍힌 현행법마저도 지킬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생존과 직결된 노동자들의 민주노조건설과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노동쟁의는 노조개입이 아닌 합법적인 공권력 개입으로 국악처방을 쓸 때 엄청난 손실과 저항이 귀마를 현정권은 모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음과 땀을 흘리며 단결투쟁, 서울지하철공사등에 이어 최근의 현대중공업의 노동쟁의에 대한 초강경 경찰진압으로 헌법에 보장하고있는 노동3권과 노동쟁의 조정법을 말살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전국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 부정본부」가 추진해 온 「세계노동절 1백주년 한국노동자대회」가 4월30일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국의 불법적인 초강경 원천봉쇄로 좌절되고 말았다. 노동자와 민중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인 인권을 요구하기 위한 이 대회를 폭력으로 파괴함으로써 저항의 불씨가 확산되어 엄청난 파국을 자초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한 군사적진압과 불법적인 탄압이나 사전봉쇄를 위한 불법적인 연행·구속·감금등은 현행법마저 무시한 채 자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심각성이 고조된다. 최근에는 더욱 폭심해진 헌정권의 노동운동탄압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노동관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

### II. 대통령이 거부한 노동법 개정안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어 국회에 환부된 개정노동관계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노동계와 학계의 요구를 절반도 받아들이지 않은 매우 미흡한 개정안이었다. 그동안 개정의 쟁점이 되어왔던 복수노조허용, 제3자 개입금지 완전철폐, 사용자의 직장재해금지, 직권중재 폐지, 생환입금제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죽스럽지 못한 개정노동법마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생각되며, 재의결의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의결에 의해 개정노동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재적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53조 4항) 얼마 전 세 야당총재의 발언에서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은 독점자본이나 당국의 폭력적 노동운동탄압행위를 비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보수대연합의 정체를 떠올리게 한다.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 가장본질적인 권한이다. 이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자주행사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거부권의 행사는 국회의 정당적 파장으로 통과됨이 국민의 법감정과 여론에 어긋날 경우에 한한다. 그런데 거부된 노동관계법개정은 정의와 형평 및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며 이시대에 꼭 해결할 과제이다.

역시 대통령의 개정노동법에 대한 거부권행사는 민주화를 내건 헌정권의 기만성을 드러냈으며 노동3권을 말살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III. 노동법의 개악과정과 개정의 필요성

노동관계법은 1953년 제정된 이래 개악의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원래 노동관계법의 탄생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구조적 모순의 심화로 노자 갈등대립을 완화시키고 노동운동을 체제안으로 끌어들이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노동법의 역사가 이 존중되며 그 기본이념으로 ①노동자 보호 ②공공사회의 이해 존중 ③집단의 자주·민주적 활동 보장 ④노자대립관계 보장 ⑤노자자치원리실현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현행노동법은 권력의 폭압기구를 동원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제도적 장치로 전락되어 있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우리 노동법이 5·16군사 정권이후 대부분 위헌·불법적인 개악의 길을 걸어온 데 있다.

5·16군사정권은 포고령 6호에 의해 노동관계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모든 사회단체·정당의 해산명령과 함께 기존 노동조직을 해체하였다.

한편 의회기아인 국가재건 회

고회의에서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고도경제성장을 내세워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어 노조활동의 억제, 정외행위의 제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주의책택들이 주요개정 내용이었다. 이는 정경유착에 의한 관재적 노동정책의 악순환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

1972년 10월 27일 제정된 유신헌법에 의해 1973년 3월 1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단체교섭의 기능약화, 노동쟁의 규제강화, 국가개입에 의한 노동쟁의의 강화 등을 주요요점으로 하는 노동법개악이 이루어졌다.

1980년 광주민주화투쟁이후 전두환 정권은 자의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보위법」이라는 위헌적 기구를 발족시켜 입법권을 대령하면서 노동

태로 나타났다. 이 거대한 투쟁은 규제일련도의 노동법을 한때 사문화(死文化) 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같은해 11월 28일 산별노조체제의 전체 내지 지방, 법각각의 단속을 극히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와 학계의 합리적 요구를 결코 반영하지 않고, 집권여당의 개정안에 야당의 타협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아직도 현행노동관계법을 위한 부당한 노동관계법을 그대로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6일에는 노동법개정 부흥을 대증정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노동법개정 투쟁본부」를 발족시켜 제도개혁과 함께 독점자본과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노동법개정 요구의 중요 쟁점을 검토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었으며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관

계법의 일부개정을 단행하였다.

IV.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개정내용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으로써 적용대상이 확대됐다(이 법제10조) 또한 근로기준 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했다. (이 법제42조) 한편 현대판 노비문서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였다. (제32조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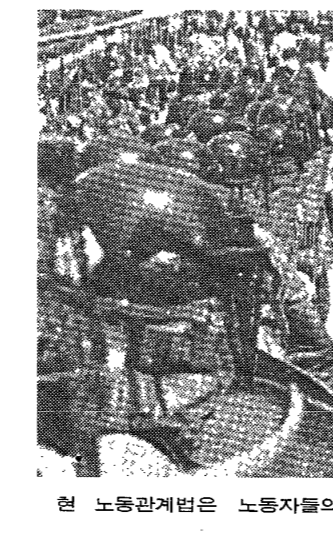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이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휴업수당의 지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체 계속 불가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 제38조)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사용자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였다(이 법 제59조) 다음으로 근로자의 과반수의견을 들어야만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법 제95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개정에서 꼭 반영되어야 할 문제인 「해고절차의 규정」이 신설되지 못한 것이 지적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 해고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 제 27조 1항) 서독·프랑스·영국등의 나라들처럼 해고제한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정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관재·행정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온갖이 사실인데,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문제이다.



현 노동관계법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불법적으로 탄압할 소지를 담고 있다.

3. 제 3자 개입금지조항은 철폐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노동자의 노조결성 및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제한의 기능을 하게 되며, 제3자의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에 부합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노조결성 및 활동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상호연대하거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문제는 그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나 자문을 얻어 자문, 전문지식, 전략등을 총동원할 수 있는 데 비한다면 이 제도는 노사간 불공평성을 승인하면서 노동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나 자문을 얻어 자문, 전문지식, 전략등을 총동원할 수 있는 데 비한다면 이 제도는 노사간 불공평성을 승인하면서 노동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나 자문을 얻어 자문, 전문지식, 전략등을 총동원할 수 있는 데 비한다면 이 제도는 노사간 불공평성을 승인하면서 노동

### V.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방향

1. 노동자의 자주적단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은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제33조 1항) 이 노동기본 3권은 노동운동을 둘러싸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마련이다. 여기서 특히 자주적 단결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노동자가 임금등 노동조건을 향상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단결(전국적, 지역별, 기업별, 산업별, 종별 등)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제로 하며 이를 금지하는 현행 노동조합법은 위헌이다. 즉 단결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본질적내용의 침해(헌법제37조 2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복수노조금지조항(노조법 제3조 단서 5호)은 철폐되어

### VI. 집합적 노사관계법의 개정방향

노동법개폐투쟁은 당연히 다른 반민주적개폐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민중·민족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개폐투쟁을 통해 노동계급이 이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서 중심적 정치세력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28일 박준규 민정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에<신규명령권 발동>을 거론한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 「노동운동」까지 발동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위헌적 발언을 함으로써 헌정권의 탄압을 모를 가시화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교전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아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만 발동할 수 있다(헌법제76조) 오늘날의 노사갈등은 워리사회의 구조적 모순때문에 후대재생산이든 것 임은 두루 일관된 사실이다.

특히 매번적 독점자본과 군부독재정권이 결탁되어 「민익민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근본인인이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우선 이러한 근본장이라고 하였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경우와 긴급조정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직권중재를 인정함으로써, 중재제도의 정당성과 실

현재 대통령의 거부에 의해 국회로 돌려보내진 개정노동법은 6급이하의 공무원의 노조결성 및 가입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현역인 및 공안관계공무원은 제외시키고 있으나(이 법 제 8 조), 공무원의 정외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교원의 노동3권을 막아놓는 현행 교육관계법령은 위헌적인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특히 교육공무원법 제53조 4항 사립학교법 제55조, 58조 1항 4호)

현재 대통령의 거부에 의해 국회로 돌려보내진 개정노동법은 6급이하의 공무원의 노조결성 및 가입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현역인 및 공안관계공무원은 제외시키고 있으나(이 법 제 8 조), 공무원의 정외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에 의해 국회로 돌려보내진 개정노동법은 6급이하의 공무원의 노조결성 및 가입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현역인 및 공안관계공무원은 제외시키고 있으나(이 법 제 8 조), 공무원의 정외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 VII. 현대적 노동법 개정투쟁과 노동운동의 방향

노동법개폐투쟁은 당연히 다른 반민주적개폐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민중·민족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개폐투쟁을 통해 노동계급이 이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서 중심적 정치세력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28일 박준규 민정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에<신규명령권 발동>을 거론한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 「노동운동」까지 발동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위헌적 발언을 함으로써 헌정권의 탄압을 모를 가시화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교전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아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만 발동할 수 있다(헌법제76조) 오늘날의 노사갈등은 워리사회의 구조적 모순때문에 후대재생산이든 것 임은 두루 일관된 사실이다.

특히 매번적 독점자본과 군부독재정권이 결탁되어 「민익민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근본인인이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우선 이러한 근본장이라고 하였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경우와 긴급조정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직권중재를 인정함으로써, 중재제도의 정당성과 실

### VIII. 노동법 개정안

노동법개폐투쟁은 당연히 다른 반민주적개폐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민중·민족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개폐투쟁을 통해 노동계급이 이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서 중심적 정치세력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28일 박준규 민정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에<신규명령권 발동>을 거론한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 「노동운동」까지 발동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위헌적 발언을 함으로써 헌정권의 탄압을 모를 가시화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교전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아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만 발동할 수 있다(헌법제76조) 오늘날의 노사갈등은 워리사회의 구조적 모순때문에 후대재생산이든 것 임은 두루 일관된 사실이다.

특히 매번적 독점자본과 군부독재정권이 결탁되어 「민익민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근본인인이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우선 이러한 근본장이라고 하였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경우와 긴급조정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직권중재를 인정함으로써, 중재제도의 정당성과 실

현재 대통령의 거부에 의해 국회로 돌려보내진 개정노동법은 6급이하의 공무원의 노조결성 및 가입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현역인 및 공안관계공무원은 제외시키고 있으나(이 법 제 8 조), 공무원의 정외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에 의해 국회로 돌려보내진 개정노동법은 6급이하의 공무원의 노조결성 및 가입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현역인 및 공안관계공무원은 제외시키고 있으나(이 법 제 8 조), 공무원의 정외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에 의해 국회로 돌려보내진 개정노동법은 6급이하의 공무원의 노조결성 및 가입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현역인 및 공안관계공무원은 제외시키고 있으나(이 법 제 8 조), 공무원의 정외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 VIII. 노동법 개정안

노동법개폐투쟁은 당연히 다른 반민주적개폐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민중·민족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개폐투쟁을 통해 노동계급이 이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서 중심적 정치세력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28일 박준규 민정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에<신규명령권 발동>을 거론한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 「노동운동」까지 발동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위헌적 발언을 함으로써 헌정권의 탄압을 모를 가시화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교전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아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만 발동할 수 있다(헌법제76조) 오늘날의 노사갈등은 워리사회의 구조적 모순때문에 후대재생산이든 것 임은 두루 일관된 사실이다.

특히 매번적 독점자본과 군부독재정권이 결탁되어 「민익민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근본인인이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우선 이러한 근본장이라고 하였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경우와 긴급조정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직권중재를 인정함으로써, 중재제도의 정당성과 실

### VIII. 노동법 개정안

노동법개폐투쟁은 당연히 다른 반민주적개폐투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민중·민족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개폐투쟁을 통해 노동계급이 이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서 중심적 정치세력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28일 박준규 민정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에<신규명령권 발동>을 거론한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 「노동운동」까지 발동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위헌적 발언을 함으로써 헌정권의 탄압을 모를 가시화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교전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아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만 발동할 수 있다(헌법제76조) 오늘날의 노사갈등은 워리사회의 구조적 모순때문에 후대재생산이든 것 임은 두루 일관된 사실이다.

특히 매번적 독점자본과 군부독재정권이 결탁되어 「민익민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근본인인이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우선 이러한 근본장이라고 하였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경우와 긴급조정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직권중재를 인정함으로써, 중재제도의 정당성과 실

“밥을 담으면 밥그릇”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쓰임새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라는 그릇에 어떤 지식을 담느냐에 따라 그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리는 일반 그릇과 다릅니다. 아무때나 담는다고 담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담느냐만큼이나 언제 담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인간이 전인(全人)이 되는 시기—바로 대학시절 뿐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대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 우리 노동자의 고혈짜서 "뱅크니"

## 외국기업의 부당 노동행위



「외국기업의 위장 합·폐업분쇄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발대식에서 공연하고 있는 슈어·프로덕츠 여성노동자들

### 1. 머릿말

현재 국내에 진출해있는 1천7백여개 업체, 50여만의 노동자가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노사문제 혹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자본의 철수와 노동운동의 탄압은 연초에 모토라와 방화살인을 시작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끊임없는 철수와 노동운동의 탄압이라는 점에서 국내기업과 본질적으로 동일하

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은 노조의 불인정에서부터 노조 탄압, 파괴공작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대응방법이 없다는 것

## 외국자본, 노동력 착취로 경제중속 심화

외국자본의 국내침투는 자본의 착취라는 증식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특수하게는 현실적 이익, 한국의 시장성 및

주변국가 시장들의 전초기지로서의 목적을 전후 혹은 일부는 바라보고 들어온 것이라 하겠다. 우선 현실적 이익이라 함은 첫째, 저임금 고

급인력—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임금(본국의 약10분의 1)으로 근면하고 재능있는 인력—을 손쉽게 고용할 수 있어서 합

의점을 보고 들어온 기업들도 상당수 있다. 물론 이들

3. 탄압의 양태  
현실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들어온 외국기업의 경우 주로 노동조합적 임가공행태인 데

## 노조탄압 분쇄·반외세 투쟁으로 승화해야

한 경영수익 악화를 일깨워 줄까? 아니면 노조에게 가장

이런 것을 가지고 토지, 공장

2. 어째서 이땅에 들어왔는가  
외국자본의 국내침투는 자본의 착취라는 증식의 발로

그런데 지난 4.23 야3당 총재회의를 통해 다시금 야권공조체제를 재연시키려는 것은 보수야당에게 있어서 민정당의 지나친 행태를 민

실업률의 방법으로 노조운동에 버려져 버려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구로3공단에 위치한 슈어프로덕츠는 총공의본

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이상에서 볼 때, 지금의 탄

그러나 지배계급의 강화된 탄압 속에서도 실제로 민권 운동은 약화되지 않고 투쟁의 성과를 차분히 축적시켜 왔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출되고 있는 것으로보아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계획된 위장합병이 명백하다.

이들은 노동법상에도 명기되어 있는 단체교섭체제를 거부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지만 이에 조합활동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발생시

다음으로 현실적 이익뿐 아니라 한국의 시장성 및 주변국가의 전초기지의 역할까지 노리고 들어온 기업들의 경우 실제로 철수하지는 않지만 노조탄압의 방법

실제 폐업을 하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예로 인천시 부평동에 있는 US마그네틱스

하여 제2공장을 사전에 타 인명의로 준비해 두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들은 노동법상에도 명기되어 있는 단체교섭체제를 거부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지만 이에 조합활동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발생시

다음으로 현실적 이익뿐 아니라 한국의 시장성 및 주변국가의 전초기지의 역할까지 노리고 들어온 기업들의 경우 실제로 철수하지는 않지만 노조탄압의 방법

실제 폐업을 하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예로 인천시 부평동에 있는 US마그네틱스

4. 맺음말  
외국기업의 극한적인 노조 탄압에 의해 일어난 노사분규의 경우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본국의 이해관계로 인한 정부의 중

이해관계로 인한 정부의 중속적 위치에 기인한 방관, 동조 그리고 유력회사를 차

다음으로 현실적 이익뿐 아니라 한국의 시장성 및 주변국가의 전초기지의 역할까지 노리고 들어온 기업들의 경우 실제로 철수하지는 않지만 노조탄압의 방법

실제 폐업을 하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예로 인천시 부평동에 있는 US마그네틱스

## 밀착 취재

『민족자본 달삭체증 외국자본 비호하는 술개배진 정부는 퇴진하라!』 구로공단내외 노 노동현장에서 들려오는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은 외국자본의 위장합병을 통해 다시금 야권공조체제를 재연시키려는 것은 보수야당에게 있어서 민정당의 지나친 행태를 민

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이상에서 볼 때, 지금의 탄

그러나 지배계급의 강화된 탄압 속에서도 실제로 민권 운동은 약화되지 않고 투쟁의 성과를 차분히 축적시켜 왔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 위장폐업 분쇄, 슈어프로덕츠

여성노동자들은 푸린한 손작업노동으로 손에 부기환한 손이 생기거나 신경통, 시력장애 등의 직업병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했다.

『슈어프로덕츠』 정의 발단은 89년 4월 11일

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그러나 지배계급의 강화된 탄압 속에서도 실제로 민권 운동은 약화되지 않고 투쟁의 성과를 차분히 축적시켜 왔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 김홍일

『슈어프로덕츠』 정의 발단은 89년 4월 11일

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이상에서 볼 때, 지금의 탄

그러나 지배계급의 강화된 탄압 속에서도 실제로 민권 운동은 약화되지 않고 투쟁의 성과를 차분히 축적시켜 왔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 탄압으로 "민족·민주" 꺾을수 없다

## 보수 공조체제의 본질과 현 국면의 의미

민족민주운동(이하 민족민주)의 급속한 성장에 의한 「합복론」로서 6·29선언 이후 정치변화의 주요한 특징은 ①의회정치와 상대적 활성화 ②정치적 억압의 부분적 완화 ③사민적 권리의 제한적 복원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 지배세력 내의 주도권의 현실적 힘은 온건파에 있다. 지난 3.27노태우의 육군 일대개편은 실질적으로 친위 체제를 굳혀가는 온건파의 자기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할 때, 노경권은 민족사의 방북을 탄압공세의 계기로써 아니라 발미로서 이용하는 것이며, 이것의 정치적 의미는 일련의 개혁을 가시화시켜 민족민주운동세력을 고립시키고 중간층을 체제내화시키고자하는 보수연합구도의 사전준비 작업으로서인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측면은 민족운동의 조직적, 대중적 성장의 급속한 진행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그러나 지배계급의 강화된 탄압 속에서도 실제로 민권 운동은 약화되지 않고 투쟁의 성과를 차분히 축적시켜 왔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 정권, 공권력 동원해 외국자본 비호

### 자주적 노동 상황만이 민족경제 수호

『민족자본 달삭체증 외국자본 비호하는 술개배진 정부는 퇴진하라!』 구로공단내외 노 노동현장에서 들려오는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은 외국자본의 위장합병을 통해 다시금 야권공조체제를 재연시키려는 것은 보수야당에게 있어서 민정당의 지나친 행태를 민

## 밀착 취재

### 위장폐업 분쇄, 슈어프로덕츠

여성노동자들은 푸린한 손작업노동으로 손에 부기환한 손이 생기거나 신경통, 시력장애 등의 직업병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했다.

## 김홍일

### 위장폐업 분쇄, 슈어프로덕츠

여성노동자들은 푸린한 손작업노동으로 손에 부기환한 손이 생기거나 신경통, 시력장애 등의 직업병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했다.

● 약은 역사에겐 진로에 의사가게

# Miss 레모나 지금은 봄이에요!

봄별의 따사로운 미스 레모나 여린 피부엔 너무 강하죠?  
봄에 깨어나는 피부— 레모나로 탄력을 유지시켜 주세요.

레모나는 체내에 잘 흡수되어 피로를 회복시켜 주며, 기미·주근깨 형성을 예방시키고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어 주는 비타민C 체제입니다.

이 봄도 레모나와 함께 싱싱한 만남의 짝을 움트게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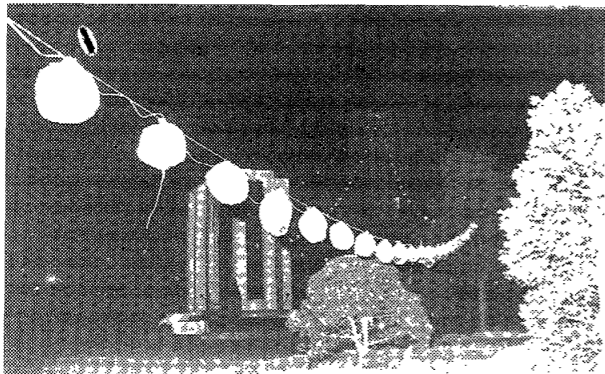
● 피로할때 ■ 기미·주근깨에 ■ 거칠어진 피부에 ■ 잇몸출혈에 ■ 공부할때

● 표준소매가: 20포 2,000원 / 240포 23,000원

PM 경남제약주식회사







### 5월의 메모

- 1일...국제노동절 1백주년 기념일
- 3일...5.3인연 반미·반파쇼 투쟁일
- 6일...제27회 전국고교생문학콩쿠르
- 8일...개교83주년 기념일, 아버지 날
- 12일...석가탄신일
- 15일...스승의 날, 성년의 날
- 18일...광주민중항쟁 9주기
- 22~26일...축제기간

<사진·지동철기자>

## 서구미학 청산과 민족전통 재창조 의의지녀

현실주의 양식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운동은 민족운동의 진전과 더불어 1983년 무렵 제기된 두가지 요구에 의해 새로운 단

기구의 집회 공간으로 넓혀져 1987년에는 6월항쟁과 대동맹선거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전국 학생미술운동연합의 결개그림 「민중항쟁운동사」가 지난 4월부터 각지역을 순회하며 전시되고있다.

### 결개그림...민중운동의 효과적 선전매체로 이용 색채리등 다양화로 운동의 올바른 방향담아내야

높은 매체효능과 매체이용으로 정식화되었고 소집단의 조직적 구성의 활력에 의해 강화되었다.

높이그림과 같은 방식의 활용에 있어 결개·깃발그림은 회화기법의 활용에 따른 매체로서 1985년 무렵 제작되기 시작하여 1986년에는 운동세력 특히, 대학 공간과

선전하였다. 1985년 광주문화재단에서 사용된 <민중의 싸움>이 최초의 결개그림으로 1987년에 이르러 결개그림은 어느 지역이나 미술운동세력이 있는 곳이면 제작되었다.

이과정에서 노출된 문제라면 시각적 접촉의 거리와 공간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잘못된 대중관에 의한 소재선택 및 주제설정, 그리고 대중투쟁의 당면과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주변적이고 비핵심적인 내용을 형상화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것의 쓰임새를 망각하고 현실상처를 울림있게 나타내지 않고 색채리등을 소용하게 하고 인물의 정형적 형상에서의 심리를 경험했으면 그것은 멀리서 보면 최대한 거리를 단축해서 보든 지향점을 혼란하게 하였다.

김배진 <문과대 국문과>

### 결개그림에 대하여

계에 접어들게 된다. 민족생활상의 요구와 민족주체적 형식의 요구로서 보다 실천적이고 자주적인 요구로 성숙하게 된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시각매체를 통한 미술운동은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양적으로 폭발적인 증가와 대중적 접근 면적이 확대된다. 선전성이라고 하는 시각매체의 본질적 요소를 근간으로 이 시기는 문화매체의 발전으로 시작하여 1986년의 활력 넘치는 새로운 매체의 개발로 비약의 시간이었다.

또한 이 시기는 서구 부르주아 미학의 청산과 더불어 민족 전통 형식을 재창조하는 새로운 형식 및 민족의 생활과 상태,

와 소비의 대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과 소비를 구성원 모두가 이루어 내어 문화의 소비는 다시 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의 주체와 대상의 극단적 이분법의 논리는 문화의 본질을 왜곡·변질시켜 지배자의 논리에 이용되며, 또 다른 형태의 주입식·나타나가 종속적 사상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의도적인 무의식적인 그러하다.

이에 비추어 우리 음악의 문화양태는 어떠한가.

문화는 수용자의 태도와 세계관에 따라 같은 문화매체를 향유하고도 다른 감정·사상·이념을 갖을 수 있다. 물론 우리들 음악은 화의와 화내에 뚜렷한 문화공간이 부재하다. 그러나 문화의 주체와 대상의 구분—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교육받았던 이러한 분리—이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고, 그러다보니 화내의 문화양태의 비주체적 수용에도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수용자의 자세나 소비적 자세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흔히 가는 술집이나 카페에 또는 학교를 돌아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이루어 낸 문화공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술집에서 취한 기분은 아무렇게나 떠돌고 노래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의 장으로 민들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토론회의 장이고 알팀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결코 문화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것만도 아니라, 같은 문화권 모든 성원의 것이라는 자각이 선행될 때 문화는 그야말로 창조적이고 주체적일 수 있다. 생산자는 수용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대화문화를 이끌어 내야하고, 수용자는 생산자의 결과물을 흥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그러나 따뜻한 시각으로 비판하여 상호결합해 나

## 진보적 학문탐구와 개방적 문화공간 조성

### —학내외 건전한 문화의場 마련 시급하다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여 시간을 보내는 유희거리이거나, 재생산의 구조를 갖지 않는 소비적(유희적·정신적) 놀이도구가 아닌 이상, 문화라는 것은, 특은 대학의 문화라는 것은 대학의 기능이 담보하고 있는 사회비판기능과 진보적 학문사상의 탐구에 맞는 건전한 문화양태이어야 할 것이다.

건전한 문화란 대학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또한 문화가 사물과 현상의 여러 양태들의 본질을 폭로하는 기능을 담보할 때, 그것은 사회현상과 현실의 고발·폭로 더 나아가서는 극복의 방법까지 제시함으로써 문화가 단



지 소비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다시 한번 재창조—재생산구조—과 생활의 발전을 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건전한 문화란 여유있는 사

람들의 쾌락과 향락의 도구가 아니라, 삶을 보다 진실되고, 또한 한 삶에 윤기를 줄 수 있는, 삶과 철저히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할 때 문화는 생산의 주체

「DIOR」  
▲지금 이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은 시험공부를 하느라 무척 바쁠 것이다. 시험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복사기의 소음, 몇주째 계속되고 있는 시험에 지친 모습은 불철 대학캠퍼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한 학기 학사일정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험기간, 그 기간동안 마음 놓고 집의 한편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새로 생긴 대학 풍속도이다. ▲저녁, 「수업시간중 교수재량에 의한 시험과 평가」라는 발언이 제시되었음에 무심히 지나쳤던 사람들조차도 시험 1년을 겨우 넘긴 지금 에와서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로 뽑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대학교육—적극적 의

미의 교육—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에서 강의가 전무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더욱 극성을 부리는 시험 부정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당국이 시험방법을 바꾼 것은 여러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수의 자율권 확대도 이유의 하나이겠지

### 시험有感

만 그보다 앞서 매년 시험때면 흥여처럼 치뤄지는 시험거부에 대한 「면역주사」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견해일 것이다. 여기서 시험에 대해 운운한다는 것이 혹자에게는 교권에 대한 첩제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 권위와 권력을 흥여해서는 안된다. 권력은 경험적으로

권위는 교육적인 것이다. 권력은 차고 날카롭지만 권위는 따뜻하고 든든하다. 권위에는 심복하고 권력에는 클복하는 것이다. 교권이 교권력(?)을 잃는 것은 아닐진대 ▲교권은 최 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다 고해서 학생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자도 교수 일 개인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시험기간은 곧 학사일정에 속하기 때문이다. 본교에는 엄연히 학사일정을 잡는 「3자 연속회의」라는 기구가 있다. 시험기간은 당연히 여기서 결정되어야 한다. 스승을 모시려는 이도 제자를 찾는 이도 없는 바쁜 시대, 이 시대는 결국 시험이라는 사각지대에서 枯死하고 있지 않은가.

<愚>

### 삼성의 개발전-①

## 똑같은걸 그렸는데 다 달랐습니다.



기업을 일으켜 국가에 보답한다는 事業報國의 社是로 창업반세기의 탐을 세운 삼성 — 한국대표기업으로서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저의 삶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재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일속에 파묻히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기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중소기업 육성에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은 첨단기술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뭘하고 있습니까? — 삼성은 이런 다양한 「점음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스스로 되돌아보고 새로운 기업인상을 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물도 그러는 사람에 따라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과 첨단기술면에서도 세계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한국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삼성은 이와같은 일을 중시합니다

- ① 자율경영 ② 인간존중 ③ 첨단기술개발 ④ 평생직장 ⑤ 국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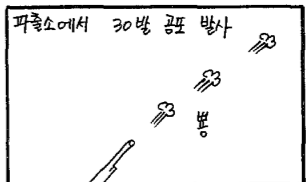
인재와 첨단기술의



## 말투기!

김성일

<7>



이에 결개그림은 민족운동의 대중투쟁에 있어 당연한 각 시기 별 과제에 적합한 내용과 형식의 적절한 구사와 연출, 전략에 의한 형상화를 과제로 안게 되었다. 그리고 선전활동으로써의 시각매체 운동은 전체 운동의 바른 방향에 얼마만큼 올바르게 출현한 활력을 재생산하느냐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신인호

<문과대 국문과>